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해위로금 지급 및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09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	2
2. 조문별 검토	8
가.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8
나.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0
다. 피해위로금의 지급	16
라. 피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절차	20
마. 피해위로금의 환수 및 소멸시효	24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26
※ 참고자료	29
1. 전시납북자 현황 등	29
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3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10. 25.
3. 회 부 일 : 2024.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납북자”로 칭하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¹⁾ 체결일(1953. 7.27.)을 기준으로 전시(戰時)납북자와 전후(戰後)납북자를 구분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에 운영비·관리비 등이 포함되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6·25전쟁으로 인한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 2017년 5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³⁾가 발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⁴⁾

1)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임.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6·25납북자법”)은 6·25전쟁 기간(1950.6.25.~1953.7.27.)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전 이후에 발생한 납북과 관련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에 근거하여 납북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음.

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에 따르면 전시납북자는 95,456명으로 추정되고, 위원회는 피해신고사건으로 접수된 5,505건 중 중복 신청 등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하여 이 중 4,777건에 대해 납북자로 결정하였음.

<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결정 현황 >

단위: 건(명)

구 분	전시납북자	신청	심사	전시납북결정
인원(명)	95,456	5,505	5,375	4,777

자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7. 5.) pp.32-33.

□ 참고로, 과거사와 관련한 법률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환납북자를 포함한 납북피해에 대해 정착금,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를 특별하게 보상하기 위해 위로금,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 과거사 관련 유사법률의 피해보상 및 지원 내용(예시) >

법률명	보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액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후납북자법’)	정착금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 정착금: 월 최저임금액 200배 범위 내 - 기본금 100배, 가산금(연령·건강·근로능력 등) 100배로 구성 ○ 주거지원금: 7,000만원 별도 ○ 최고액: 2.5억원(정착금+주거지원금)	신청 467건 중 444건 결정, 약 154억원 지급 -정착금 18억(9건) -피해위로금 134억(432건) -보상금(의료지원 포함) 26억(3건)
	피해위로금	3년 이상 납북된 자의 가족	○ 월 최저임금의 36배 범위 내 - 월 최저임금 × 납북년수 - 65세 이상인 경우 10% 가산	
	보상금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 국가공권력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 사망자: 사망 당시 임금 등을 감안하여 보상 ○ 상이자: 노동력 상실률, 장래 취업가능기간 감안하여 보상	
	의료지원금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 국가공권력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법률명	보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액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 법')	위로금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장해자	○ 사망자 또는 행불 자: 1명당 2천만원 ○ 장해자: 장해정도를 고려하여 1명당 2천 만원 이하	신청 123,094건 중 78,083건 결정, 약 6,418억원 지급
	의료지원금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 노령·질병 또는 장 애 등으로 치료가 필 요하거나 보조장구 (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 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 용의 일부	-위로금 4,662억원 -미수금 524억원 (17,299건) -의료지원금 1,232 억원(24,541건)

자료: 통일부(2025. 2. 현재)

□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납북자가 대거 발생하였고,

남은 가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家長)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⁵⁾ 전쟁 중의 납북피해에 대한 지원은 그 필요성이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6·25전쟁은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 중 하나로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였다는 점⁶⁾을 고려하면, 전쟁 당시 한반도에 살고

5) 전신납북결정자 4,777명 중 연좌제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322명(6.7%)이고,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험·취업·승진 혹은 군복무상 불이익을 주장한 사람이 195명(60.6%),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감시 등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람이 104명(32.3%), 가택수색이나 재산압류 등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주장한 사람이 23명(7.1%)으로 나타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p. 259.

6) 남한지역에서는 군인 약 62만 2천명, 경찰 약 1만 7,400명, 민간인 약 99만 1천명 등 총 162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물적 피해액은 약 4,100억원으로, 1953년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570억원임을 감안할 때 그 피해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음(출처: 박동찬,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237, 494).

있던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국가의 피해
보전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정
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봄.

< 6·25전쟁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 >

(단위: 명)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합계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990,968

출처: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5), pp. 212~213.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전시납북자 등에 위로금
지급을 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5년간) 총 4,183억 4,5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음.⁷⁾ 그런데, 이 비용추계는 위원회가 납북피
해자로 결정한 4,777명에 대한 지원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시납북
자 수가 9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요액은 더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2조의2)	2,799	2,855	2,912	2,970	3,029	14,564	2,913
피해위로금 지급 (안 제12조의3)	74,922	77,761	80,602	83,639	86,857	403,781	80,756
합 계	77,720	80,616	83,514	86,609	89,887	418,345	83,669

자료: 예산정책처

7) 예산정책처 의원실 회답(2024.12.19.), [참고자료 2] 참조.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이 유효하게 행사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그 피해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 남북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이 전쟁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초과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추가 재정소요에 따른 국가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⁸⁾

□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 관점에서 전시 납북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6·25전쟁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6·25전쟁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진상규명이 늦어진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간 전시납북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적 위로금 지원 등 전시납북자를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는 6·25 전시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곤란, 전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전시납북자 입증의 증빙 어려움, 추정 납북자 규모를 고려할 경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보이고 있음.⁹⁾

8) 개정안에 따라 전시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률 제명에서도 현 진상규명, 명예회복 외에 “보상” 또는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9) 통일부(납북자대책팀) 의견 제출(2025. 1.16.).

2. 조문별 검토

가.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12조)

- 개정안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단체의 운영비, 관리비 등 필요한”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필요한</u>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 ----- ----- ----- ----- <u>단체의 운영비,</u> <u>관리비 등 필요한</u> ----- -----.

-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4조¹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6. (생략)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생략)

③·④ (생략)

- 동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통일부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사)6·25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약칭 “전시가족회”)이고, 매년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¹¹⁾
- 개정안은 현재 “필요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구를 “단체의 운영비, 관리비 등 필요한”으로 수정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부가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자가족 단체 또는 관련 연구단체의 활동을 좀더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교부하고 사업비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운영비·관리비 등 지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¹²⁾

11) < 최근 5년간, 전시가족회 보조금 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 액	100	100	100	100	100

< 2024년도 전시가족회 보조금예산 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계
편성액	22,800	68,220	0	8,980	100,000

12) 보조금의 편성·집행 등 관리에 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상 그 지급 근거만을 두고, “○○은 ○○을 위하여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을 억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보조금법의 취지(법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상경비는 보조하지 못하도록 하

나.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의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 개정안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조의2(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u> <u>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u>

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조금 제도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규정해야 함. 『법제이론과 실제』(2019, 국회법제실), pp. 448~452 등 참조.

	<u>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u> <u>· 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u> <u>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u> <u>이상 재직한 자</u> 3. <u>통일부·법무부 및 행정안전부</u> <u>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u> <u>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u> <u>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u> <u>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u> 4. <u>남북관계, 납북자 문제에 관한</u> <u>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u> <u>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u> ④ <u>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u> <u>호선한다.</u> ⑤ <u>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u> <u>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	--

- 정부는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¹³⁾를 설치·운영한 바 있음. 동 위원회는

1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법 제9조¹⁴⁾에서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6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완료하도록 규정한 바,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12일까지 활동하였음.¹⁵⁾

□ 이와 같이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는 바, 개정안은 전쟁기간 중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된 아픔을 겪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개별적 보상을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 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12조의2)에서 심의위원회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위원회는 납북피해자의 피해 신고접수를 당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접수 추이 및 납북피해 가족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신고 마감기한을 2015년 12월 12일까지 연장하여 약 5년간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처리하였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 ⑤ (생략)

15)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사무국 운영에는 공무원(별도정원 10명 포함) 등 총 24명이 지원하였음(2011년 기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결산 현황(2011~2016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위원회 운영비	2,475	2,236	2,378	2,585	2,332	1,499	2,251

주: 결산액 기준(전체 운영비에는 전시납북 진상 및 실태조사, 납북피해 기념관 건립,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운영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건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정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통일부 제공)

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납북 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록 각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다르지만, 두 위원회 모두 납북피해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이고 심의위원의 구성, 자격요건 등이 동일한 바,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전시납북자 관련 피해위로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두는 한시적인 위원회이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활동기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전후납북자법」 제6조 및 제7조	「6·25납북자법」 개정안 제12조의2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통일부장관 소속으로</u>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u>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u>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제12조의2(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통일부장관 소속으로</u>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u>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u>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남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남북관계 또는 남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통일부·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남북관계, 남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남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남북관계 또는 남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통일부·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남북관계, 남북자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심의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5년(2026-2030)으로 가정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약 145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2조의2)	2,799	2,855	2,912	2,970	3,029	14,564	2,913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예산정책처(행정비용추계과)

다. 피해위로금의 지급(안 제12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피해위로금 수급 권리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2조의3(피해위로금)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u> <u>②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납북자가족의 순위는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u> <u>③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u> <u>④ 피해위로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과 관련한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에 대한 개별 보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권리를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위로금이 양도나 담보·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¹⁶⁾임을 명시 규정할 경우에는 납북으로 인한 그간의 아픔을 다소 위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
- 전시납북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미 이루어져 피해위로금의 대상인 납북자가 4,777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위로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5조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으로 피해신고 접수를 하고 납북자 등으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¹⁷⁾
- 개정안(제12조의3제2항)은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납북자가족의 순위는 제2조제2호¹⁸⁾에 규정된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지분의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제2호는 납북자

16) ‘비과세’는 조세부담의무뿐만 아니라 납세협력의무까지 면제된다는 점에서 ‘조세 감면’과 차이가 있음.

17) 참고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로금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1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생략)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 등 권리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피해위로금 지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후납북자법」 제3조¹⁹⁾와 같이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봄.

□ 개정안(제12조의3제4항)은 조세특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만 특례 규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²⁰⁾

아울러 개정안(제12조의3제5항)은 피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단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보상 성격의 피해위로금은 입법자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관련 유사법률을 참고하여 피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²¹⁾

1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0) 정신적 위로나 격려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등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전후납북자법」 제19조(조세의 면제)에서도 개정안(제12조의3제4항)과 동일 문구를 사용하였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지 아니하였음.

21) 「전후납북자법」은 제9조제2항에서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후납북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를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에게 적용하여, 동 개정안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5년간) 약 4,037억 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 피해위로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피해위로금 지급 (안 제12조의3)	74,922	77,761	80,602	83,639	86,857	403,781	80,756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예산정책처(행정비용추계과)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피해위로금) ① (생략)

② 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피해위로금의 금액)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지급결정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북기간의 산정은 연(年)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월(月)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한 후 12로 나누어 연으로 환산한다.

라. 피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절차(안 제12조의4부터 안 제12조의8까지)

- 개정안은 피해위로금의 지급신청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결정서 송달, 재심의 등 지급까지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4(피해위로금 지급신청) ① <u>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으로서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② <u>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③ <u>그 밖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제12조의5(심의 및 결정) ① <u>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u>

<신 설>

<신 설>

그 내용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정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7(재심의) ①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신 설>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정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을 준용한다.

제12조의8(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의 지급) ① 피해위로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의 방법(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지급신청 시 심의위원회의 처리기한(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120일 이내), 심의위원회 결정서의 송달기한(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 준용), 재심의 요청기한(결정성 송달부터 30일+90일 이내), 동의서 제출 등 피해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 규정이므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제12조의3제5항에서 피해위로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미 규정한 바, 법률에 규정할 사항과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을 구분하여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 피해위로금의 환수 및 소멸시효(안 제12조의9 및 제12조의
10 신설)

-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받은 경우 등의 환수에 대해, 그리고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9(피해위로금의 환수) ① 국가는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피해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예에 의한다.
<신설>	제12조의10(소멸시효)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개정안 제12조의9의 경우 통상적인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 피해위로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의10과 관련하여,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하여 확정채권을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권리의 소멸시효를 너무 짧게 규정할 경우 납북자 등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면서 단기소멸시효(3년 또는 1년)를 두고 있고,²²⁾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라 할 수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로지원금 등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²³⁾

22)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안 제17조 등)

-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u>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u><신 설></u>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위원</u> ----- ----- ----- ----- -----.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9조(벌칙) (현행 제18조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유사입법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효)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현행법에서, 벌칙 적용에 공무원 의제를 두는 입법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적인 업무 수행 중 특정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제17조)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봄.
- 한편, 벌칙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충적·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의무 위반의 성질·태양(態樣) 등에 따라 적절한 제재수단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함.²⁴⁾
- 개정안(제18조)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²⁵⁾

24)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17.6.26. 지침 제313호)에 따르면,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이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징역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2013년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도, 국회사무처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소득과 지출의 통계, 환형유치에서의 평균적 환산비율을 고려하여 벌금형 설정기준을 일반기준(징역형 1년당 1천만원) 및 특별기준(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과급효과 있는 경우에는 일반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으로 구분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25) 참고로, 「전후납북자법」에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에 대해, 개정안과 같은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동 개정안에서는 피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위로금 지급 기준을 먼저 결정한 후에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수령 등에 대한 처벌 입법례를 참고하여 적정 벌칙 수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안 제19조(현행 제18조)에서 “제7조²⁶⁾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69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6)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1】 전시납북자 현황 등²⁷⁾

- 6·25전쟁 중 북한은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 동원 및 인민군 충원을 위해 다수의 인원을 강제동원
- 당시 정부발간 명부 등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전시납북 진상규명 실시
 - 2010년 9월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6.25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의 규모를 잠정적으로 10만명 내외로 판단

① 연령별 분포

연령대	인원 (명)	비율 (%)
10세 미만	255	0.3
10대	10,207	10.7
20대	54,802	57.4
30대	18,718	19.6
40대	6,297	6.6
50대	2,959	3.1
60대	919	1.0
70대	194	0.2
80대	27	0.0
90세 이상	5	0.0
불 명	1,073	1.1
합 계	95,456	100.0

자료 출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7) 통일부(납북자대책팀 제출, 2024.8.6.)

② 성별 분포

성 별	인원 (명)	비율 (%)
남 성	92,299	96.7
여 성	1,899	2.0
불 명	1,268	1.3
합 계	95,456	100.0

자료 출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 '10.12~'15.12월까지 5,505건 접수, 4,777명을 전시납북자로 결정, '17.6위원회 활동 종료

○ 전시납북 피해자 지원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에 의거,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전시납북피해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또한, 전시납북피해자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매년 1억원)을 지원

【참고자료 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추계번호 24D4524)²⁸⁾

1.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²⁹⁾의 위로금 지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77억 2,000만원, 2030년 898억 8,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183억 4,500만원(연평균 836억 6,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12조의2)	2,799	2,855	2,912	2,970	3,029	14,564	2,913
위로금 지급 (안 제12조의3)	74,922	77,761	80,602	83,639	86,857	403,781	80,756
합 계	77,720	80,616	83,514	86,609	89,887	418,345	83,669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8)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분석관(6788-4664) 작성

29) 이 법 제2조(정의)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납북 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 신설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12조의3(피해 위로금) 신설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재량규정

3.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의2(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 신설	○	—
2	안 제12조의3(피해위로금) 신설	○	—

4.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자 수는 과거 2017년 6월까지 운영되었던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납북피해자 및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심사·결정한 사람 수인 4,777명으로 하며, 추계 기간 동안 추가 납북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납북피해 신고 접수·처리기간이 5년(2011~2015년)³⁰⁾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위로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도 5년간 이루어진다고 가정

30)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납북피해자의 피해 신고접수를 당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접수 추이 및 납북피해 가족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신고 마감기한을 2015년 12월 12일까지 연장하여 약 5년간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처리하였음